

case

7

## 크릴오일 구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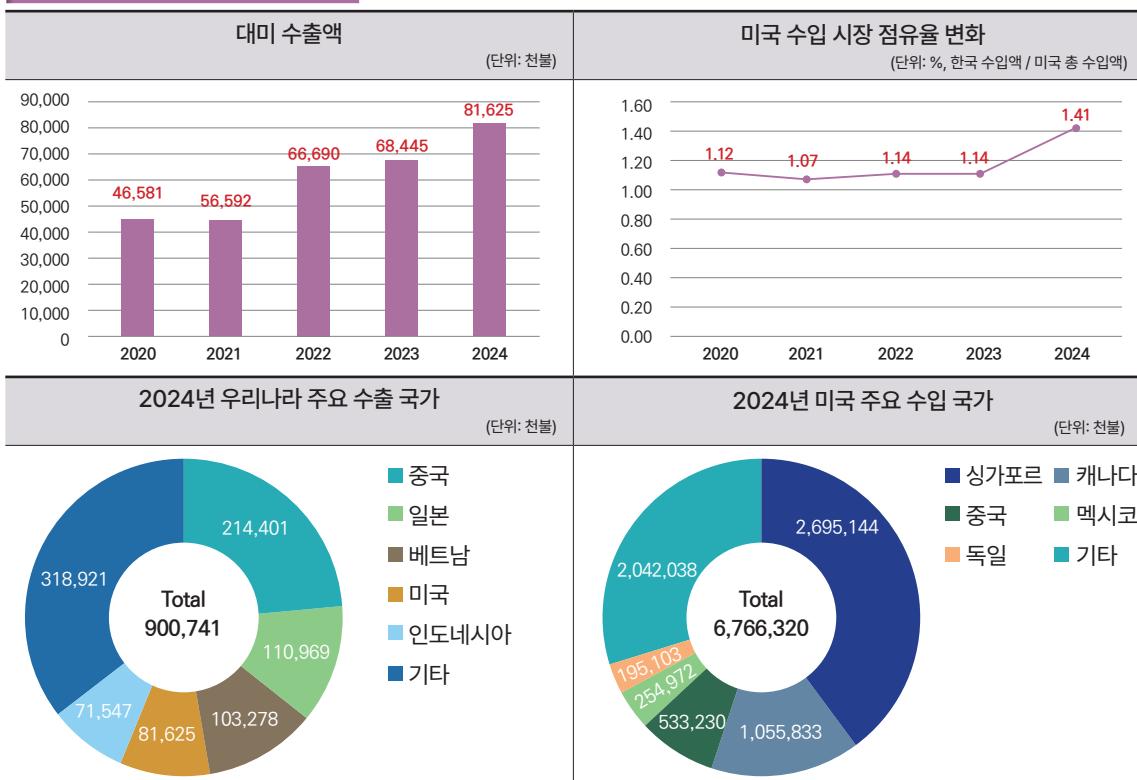
사례명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3535 (2022.02.02)
사실관계	중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크릴오일, 감미료, 향료 등)를 혼합, 가열, 성형, 건조, 코팅 하여 생산한 크릴오일 구미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중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원재료(크릴오일)의 명칭·성질·용도를 변경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210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30%
	미국 기본세율	0~10% or 종량세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나.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실·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에서 생산된 것 4.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5.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7.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된 것 8.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210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3535 (2022.02.02.)

#### 사실관계

요청자 Sirio Nutrition Co., Ltd.

제품명	• Krill Oil Gummy (Sugar Coated)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릴오일, 천연 레몬향, 천연 자몽향 (미국산)</li> <li>• 포도당 시럽, 자당, 물, 캐스터 설탕, 젤라틴, 오렌지 주스 농축액, 사과 주스 농축액, 구연산, 비타민 C, 젖산, 천연 오렌지 향 2종, 레시틴 등 (중국산)</li> <li>• 밀 전분, 아카시아 검 (프랑스산)</li> <li>• 흑당근 주스 농축액 (덴마크산)</li> </ul>
제품	
용도	• 브랜드/도매업체 판매용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6.90.9500 (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이내)</li> <li>• 2106.90.9700 (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초과)</li> <li>• 2106.90.9897 (소매용 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li> </ul>

#### 제조공정



**중국 상세공정**

1. 젤라틴을 액화하여 시럽에 첨가
2. 크릴 오일 및 나머지 원료들과 함께 혼합
3. 액상 혼합물을 몰드에 부어 적정 수분 함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
4. 건조된 구미를 캐스터 설탕으로 코팅
5. 밀봉된 용기(비소매용)에 포장
6.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판정 결과

- ☞ 미국산 크릴오일은 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크릴오일 구미'라는 명칭·성질·용도가 변화된 전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크릴오일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 번인 9903.88.15도 함께 신고해야 함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

## 결론

- ✓ 크릴오일을 포함한 여러 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상업적 완제품으로 제조되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③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3535 (2022.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2353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p.+1026+%281982%29>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